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윤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7953

발의연월일: 2025. 2. 6.

발 의 자:김 윤·권향엽·이재관

박지원 • 한창민 • 이수진

박용갑 · 오세희 · 정진욱

이원택 · 정일영 · 전종덕

이재정 • 이광희 • 박선원

최민희 • 황명선 • 문금주

남인순 의원(19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의학 등에 관한 교육·연구와 진료를 통하여 의학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국립대학병원의 설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.

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국립대학병원의 역할이 중요하지만, 국립대학병원이 교육부 소관으로 관리되고 있어 지역거점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.

이에 국립대학병원의 소관 부처를 보건복지부로 변경하고, 지역 내 원활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공보건의료 기능을 강화하며, 다양 한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이사의 구성을 변경하는 등 지역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(안 제1조, 제4조제2항, 제8조, 제8조의2 신설, 제10조 등).

법률 제 호

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"도모하고"를 "도모하고,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여"로 한다.

제4조제2항 중 "교육부장관"을 "보건복지부장관"으로 한다.

제8조제2호 중 "전공의(專攻醫)의 수련과"를 "지역 내 공공보건의료기 관과 전공의 수련 및"으로 하고, 제7호를 제10호로 하며, 같은 조에 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7.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한 연구
- 8. 지역 내 공공보건의료기관과의 협력
- 9. 지역 내 의료기관에 대한 임상교수요원 등 의료인력 파견 및 지원

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8조의2(성과평가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학병원의 원활한 의료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8조에 따른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,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.
 -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

- 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업무 수행상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.
-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학병원에 대한 재정지원 시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.

제10조제1항 중 "11명"을 "20명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부분 전단 중 "교육부장관"을 "보건복지부장관"으로 하며, 같은 항에 제6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3항중 "교육부장관"을 "보건복지부장관"으로 한다.

- 6. 해당 대학병원의 제16조에 따른 임상교수요원 대표 2명
- 7. 해당 대학병원의 전공의 대표 2명
- 8. 3년 이상 재직한 해당 대학병원 소속 근로자(「근로기준법」 제2 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. 이하 같다) 중에서 근로자 대표(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말한다)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 2명
- 9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자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
- 10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 제14조제3항 중 "교육부장관"을 "보건복지부장관"으로 한다. 제16조제3항 중 "경력"을 "경력 또는 「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」

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에 파견근무한 경력"으로 하고,

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대학병원은 보건복지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임상교수요원을 지역 내 의료기관에 파견하여야 한다.

제21조 전단 중 "교육부장관"을 "보건복지부장관"으로 한다.

제22조제1항 중 "교육부장관"을 "보건복지부장관"으로 한다.

제23조 중 "교육부장관"을 "보건복지부장관"으로 한다.

제25조제2항 중 "교육부장관"을 "보건복지부장관"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행한 행위 및 교육부장관에 대하여 행한 행위는 이 법의 해당 규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행위 또는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.

제3조(당연직 이사 임명에 관한 경과조치) ① 이 법 시행 후 당연직이사를 임명할 당시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정규정의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는 제10조제2항제6호부터 제10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명하여야 한다.

② 당연직 이사의 임명에 관하여 제1항에 따라 제10조제2항의 개정

규정이 충족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제4조(임상교수요원의 경력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전에 대학병원 임상교수요원이 「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에 파견근무한 경력은 제16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관련대학의 교원으로 근무한 것으로 본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법은 국립대학병	제1조(목적)
원(서울대학교병원은 제외한다)	
을 설립하여 「고등교육법」에	
따른 의학 등에 관한 교육・연	
구와 진료를 통하여 의학 발전	
을 <u>도모하고</u> 국민보건 향상에	도모하고, 지역 간 의료격차
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	<u>를 해소하여</u>
제4조(정관) ① (생 략)	제4조(정관) ① (현행과 같음)
② 대학병원의 정관을 변경할	②
때에는 <u>교육부장관</u> 의 인가를	<u>보건복지부장관</u>
받아야 한다.	
제8조(사업) 대학병원은 다음 각	제8조(사업)
호의 사업을 한다.	
1. ~ 6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전공의(專攻醫)의 수련과 의	2. 지역 내 공공보건의료기관과
료 요원의 훈련	전공의 수련 및
3. ~ 6. (생 략)	3. ~ 6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7.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한
	<u>연구</u>
<u><신 설></u>	8. 지역 내 공공보건의료기관과
	의 협력
<신 설>	9. 지역 내 의료기관에 대한 임

7. (생략) <신 설>

제10조(임원) ① 대학병원에는 이 제10조(임원) ① ------사장 1명을 포함한 이사 11명

상교수요원 등 의료인력 파견 및 지원

10. (현행 제7호와 같음)

제8조의2(성과평가) ① 보건복지 부장관은 대학병원의 원활한 의료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제8조에 따른 사업의 성과 를 평가하고, 그 결과를 공개하 여야 한다.

-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를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 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 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 의 제출이나 업무 수행상의 협 조를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 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 하여야 <u>한다.</u>
-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학병원 에 대한 재정지원 시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.

-----20명 -

과 감사 1명을 둔다.

② 이사장은 관련대학의 총장이 되며 이사는 다음 각 호에해당하는 사람(이하 "당연직이사"라 한다)과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교육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. 이 경우당연직이사 외의 이사 중에는병원 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가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.

1. ~ 5. (생 략) 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②
<u>보건복지부장관</u>
1. ~ 5. (현행과 같음)
6. 해당 대학병원의 제16조에
따른 임상교수요원 대표 2명
7. 해당 대학병원의 전공의 대
표 2명
8. 3년 이상 재직한 해당 대학
병원 소속 근로자(「근로기준
법」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
근로자를 말한다. 이하 같다)
중에서 근로자 대표(근로자의
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
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의 대
표자를 말한다)의 추천이나
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

사람 2명

<신 설>

<신 설>

- ③ 감사는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교육부장관이 임명한다.
- ④·⑤ (생 략)
- 제14조(대학병원장) ①·② (생 저략)
 - ③ 원장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교육부장관이 임명한다.
 - ④ ~ ⑦ (생 략)
- 제16조(임상교수요원) ①·② (생 저략)
 - ③ 제1항에 따른 임상교수요원을 「고등교육법」 제3조에 따른 국립학교의 교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대학병원에서 임상교수요원으로 근무한 <u>경력</u>은 관련대학의 교원으로 근무한 것으로 본다.

<신 설>

9. 대통령령으로 성하는 환자단		
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		
10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민		
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		
③		
<u>보건복지부장관</u>		
④·⑤ (현행과 같음)		
ll 14조(대학병원장) ①·② (현행		
과 같음)		
③		
<u>보건복지부장관</u>		
④ ~ ⑦ (현행과 같음)		
에16조(임상교수요원) ①·② (현		
행과 같음)		
③		
<u>경력 또는</u>		
「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」		
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		
료기관에 파견근무한 경력		
④ 대학병원은 보건복지부령으		
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		

④ (생략)

제21조(사업계획서 등의 제출) 원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사업계 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<u>교</u> 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
제22조(결산서의 제출 등) ① 원 장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「공인회계사법」 제 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의 회계 감사를 받은 후 이사회의 심의 ·의결을 거쳐 다음 회계연도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<u>교육부</u>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(생략)

제23조(감독) 교육부장관은 대학 병원의 업무를 지도·감독하며, 업무·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 거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.

제25조(과태료) ① (생 략)

따른 임상교수요원을 지역 내
의료기관에 파견하여야 한다.
⑤ (현행 제4항과 같음)
제21조(사업계획서 등의 제출)
보건
<u>==</u> 복지부장관
·
 제22조(결산서의 제출 등) ①
제22소(전전시키 세월 등) ①
보건복지부
<u> 장관</u>
② (현행과 같음)
제23조(감독) <u>보건복지부장관</u>
<u>.</u>
제25조(과태료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	2
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	
<u>교육부장관</u> 이 부과·징수한다.	보건복지부장관